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30호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창원시 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바. 음식특화거리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7,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cost403@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이원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9
----------	-----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의 원 : 이원주 · 구점득 · 김경희 · 김남수 · 김묘정
김상현 · 김수혜 · 김혜란 · 남재욱 · 문순규
박선애 · 백승규 · 서명일 · 성보빈 · 안상우
이우완 · 이종화 · 정길상 · 정순욱 · 진형익
최은하 · 한은정 · 홍용채 의원(23명)

1. 제안이유

창원시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음식특화거리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2호·제8호에 따라 신고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대표요리의 종류가 동일한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음식특화거리 선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목표 및 추진 계획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 지역(1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 수 있다.

1. 거리환경, 거리시설 및 상권의 규모
2. 거리의 역사성,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3.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표음식 취급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인 동의서(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5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변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6조(선정)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선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선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요리의 종류가 동일한 음식점의 수가 감소하는 등 음식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받거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음식특화거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3. 축제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음식 개발·보존·품질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품평회 등 개최 사업
5.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음식특화거리로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음식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2. 사업의 특성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단체명			

신청사항	음식특화거리명	
	위 치(소재지)	
	동일한 대표 요리명	
	예정거리 음식점 수	
	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	
	창원시 대표음식 취급 여부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

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작성방법

1. 상인 동의서는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가 포함된 동의서로서 예정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인조직의 명부에는 업종, 업소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는 입구 점포·출구 점포, 직선거리, 음식점 위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에는 신청 배경 및 목적, 거리 특성(환경, 시설, 규모, 역사성 등), 활성화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음식특화거리 선정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특화거리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창원시 심의	음식특화거리 선정 심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특화거리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음식특화거리 선정 관리대장			
거 리 명		신청당시 업소수	
위 치 (소재지)			
선정일자		선정번호	
상인조직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특화거리 사진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1. 12. 19.>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삭제 <2011. 12. 19.>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